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28

제출년월일 : 1998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개정이유

실업고통분담을 위한 간접실업대책 추진을 위하여 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 포함)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입장료 전액과 사계절썰매장 사용료 50%를 감면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 포함)에 대하여 입장료 전액과 사계절썰매장 사용료 50%감면 조항 신설

□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슴

□ 관계법령 (별첨)

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 포함)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입장료등의 감면) 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 포함)에 대하여는 사계절 썰매장 사용료 50%를 감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, 단 제7조 제10호 및 제7조의2는 1999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.